

채권계산서

사 건 20○○타경○○○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 권 자 ○○○ 채 무 자 ◇◇◇ 배당요구채권자(선정당사자) ◉◎◎

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신청한 채권자들은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차 ○○○호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들로서 이미 체불임금확인서 및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등을 임금채권으로 최우선변제 받는데 필요한 서류로 제출하였으며, 집 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과 별지와 같이 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지급명령정본 1통

20○○. ○. ○. 위 배당요구채권자(선정당사자) ●●●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채 권 계 산 서

성 명	판결원금	연 ㅇㅇ%이자 (20ㅇㅇ. ㅇ. ㅇ - 20ㅇㅇ. ㅇ. ㅇ)	합계
	5,751,340원	○○○원	000원
●1●	9,948,809원	000원	000원
•2•	6,478,618원	000원	○○원
합 계	22,178,767원	000원	000원



제출법원	경매법원	제출시기	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까~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규	
기 타	서의 취지와 권액을 보충하 • 담보권실행을 보채권의 일부는 다른 특별 된 채권액을 청구금액을 확 할 수 없으나 채권으로 이기	그 증빙서류에 가지 못함(민사 위한 경매절처 부만을 청구금역 한 사정이 없는 한도로 확정되 사장하여 제출하 사장하여 제출하 사 등 부대채권 사 등 부대채권 재권을 증액하는 취지는 아니라	내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 의하여 계산하며, 이 경우에는 다시 채 집행법 제254조제2항). 사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 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 라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 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 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 고 할 것임(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99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